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건의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43
----------	-----

2014년 12월 17일
운영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. 11. 28. 김경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14. 12. 2.
- 다. 상정일자 : 제257회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

【2014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김경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,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혼재되어 있음.

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의 도입 취지와 의회 인사구조를 볼 때, 순환보직 형태의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의회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균형 있는 시각 등을 제시할 전문 직위가 필요함.

이에 의회사무처 조직 중 사무처장과 공보실장, 예산정책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의원차원의 전문성, 개방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건의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

- 건의안은 의회사무처 조직 중 사무처장과 공보실장, 예산정책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함으로써 의원 차원의 전문성, 개방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임.
-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의 도입 취지와 의회 인사구조를 볼 때, 순환보직 형태의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의회에 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전문성과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직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제안되었음.

2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 및 현황

- 개방형직위제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한 공개모집과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최적격자를 임용토록 하는 제도임.
- 사회 전체 인력 풀에서 공직을 담당할 수 있는 적격자를 수혈함으로써 폐쇄적 임용제와 신분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인사제도에서 공무원의 무사안일, 복지부동,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개방형 직위 제도의 도입 취지임.
- 「지방공무원법」(제29조의4)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(제2조)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, 5급 이상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개방형 직위 지정이 가능함.

-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가 지정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 정원은 총 57개이며, 2014년 8월말 기준 본청 여성가족정책실장 등 50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되어 있음(참고자료 참조).

▶ 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

(2014.11.30.기준)

구 분	총직위수	지정수	1급	2급	2~3급	3급	4급	비고
계	577	50	2	1	3	10	34	
본 청	151	20	2	1	3	2	12	
사 업 소	374	17				7	10	
직속기관	26	2				1	1	
시 의 회	26	11					11	

3 집행부 의견

- 집행부는 의견회신을 통하여 개방형직위 총 50개 직위 중 시의회가 11개 (22%)를 유지하고 있는 바, 의회사무처 직위수 26개의 42%에 해당되어 지정범위 10%를 초과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음.
- 또한 의회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이 본청(13.2%)·사업소(4.5%)·직속기관(7.7%) 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, 본청, 사업소 등 타 소속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음.
- 그러나 개방형직위 지정은 업무의 성격과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안이므로, 본청 등의 개방형 직위 지정 비율과 단순비교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바,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움.
-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제4차('14.9.2) 회의에서 집행부(기획조정실장과 행정국장)는 공보실장과 예산정책담당관의

개방형 직위 지정은 가능하지만 의회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집행부의 1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음.

4 의회 인사권 독립과의 관계

-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, 의회와 집행기관이 기관대립형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, 의회 사무직원의 집행기관에 대한 인적·물적 독립성이 취약하다고 하겠음.
- ※ 「지방자치법」 제91조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(방호·속기·운전 등)에 대해서는 (의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) 의회 사무처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고 있는 바, 제한적 범위내에서 지방의회 인사권이 일부 독립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.
- 건의안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는 사무처장 등의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경우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제한적이거나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- 현행 「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조하고 있고(제14조③),
- 또한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‘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’을 확정·발표(2014.12)한 내용에 따르면, ‘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’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을 부여(다만 의회사무처장은 제외)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건의안은 국정방향과 일치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.

5 결 론

- 건의안의 제안 내용은 개방형 직위의 도입 취지와 의회의 인사독립성 확보 필요성, 관련 특별법의 입법취지와 국정운영방향과도 일치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임.
- 다만 개방형 직위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의 공정한 선발과 업무실적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 개방형 직위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.
- 또한 배타적 공직문화와 계약직 신분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행정의 안정성·공정성 및 일관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제도운영상의 주의가 필요함.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없음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9명, 전원찬성)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 건의안

서울특별시의회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은 일반직 공무원, 임기제 일반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으로 혼재되어 있다.

일반직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및 경력과 경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, 의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여 볼 때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시각이 필요한 의회 전속 직위가 있다.

현재 의회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하부조직을 전반적으로 지휘·통솔하는 위치에 있으며, 공보실장은 의회홍보, 방송·보도 지원 등의 사무를 분장하고 있고, 예산정책담당관은 예산안 및 결산안 등에 대한 분석, 의안에 대한 소요 비용의 추계, 재정운영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 등 매우 전문적인 업무영역을 담당하고 있다.

이들 직위는 보다 폭 넓고 균형 있는 시각과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.

이에 의회 차원의 전문성, 개방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, 의회사무처장과 공보실장, 예산정책담당관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도록 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」을 개정할 것을 서울특별시장에게 건의한다.

※ 첨부: 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」 신·구조문대비표

2014. 11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일동

※ 첨부

「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하부조직) ① 사무처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장(이하 "처장"이라 한다) 밑에 공보실장·의정담당관·의사담당관·입법담당관·예산정책담당관을 두며, 공보실장 및 각 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<u>입법담당관</u>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</p> <p>③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.</p> <p>④ 제3항의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는 전문위원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하부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 <u>사무처장·공보실장·입법담당관·예산정책담당관</u>은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